

부천테크노파크3단지 광고물 관리규정

제1조 [목적]

이 규정은 부천테크노파크3단지 입주사 업무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관리규약 제56조[광고물관리]에 의거 각 입주사의 상호 간판 및 영업안내 표시장소, 표시방법과 설치위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미관 저해 방지와 건물의 품위를 유지하고 위험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[분류 및 용어의 정의]
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『정면간판』이라함은 근린생활시설 등 전면 즉 간판을 부착할 수 있는 위치에 밀착하여 부착한 간판을 말한다.
- ② 『돌출간판』이라함은 건물의 모서리 또는 건물의 경계벽에 돌출시켜 부착하는 간판을 말한다.
- ③ 『입간판』이라함은 이동이 가능한 간판을 말한다.
- ④ 『지주이용간판』이라함은 독립된 지주에 부착하는 간판을 말한다.
- ⑤ 『현수막』이라함은 프랭카드 라고도하며 천, 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나 도형 등을 표시하여 지주나 일정한 게시시설에 양끝을 메달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.
- ⑥ 『벽보』라함은 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, 도형 등을 표시하여 지정 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는 광고물을 말한다.
- ⑦ 『에드벨룬』이라함은 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, 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이나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을 말한다.
- ⑧ 『전단』이라함은 종이 또는 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, 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실·내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을 말한다.
- ⑨ 『스티커』라함은 광고물의 앞 또는 뒷면에 접착제로 부착할 수 있게 하는 광고물을 말한다.
- ⑩ 『인포메이션』이라함은 건물1층 현관에 각 입주사의 상호안내간판을 말한다.
- ⑪ 『층안내간판』이라함은 각 승강기 내 또는 승강기 입구주위 벽면에 부착한 층별 인포메이션을 말한다.
- ⑫ 『광고설치물』이라함은 입주사등의 생활편의를 위해 단지 내 시설물에 설치된 부속물로서 상업광고로 게재된 설치물을 말한다.
- ⑬ 『상행위』라함은 전단배포, 물품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.

- ⑭ 『광고주』라함은 부착물광고를 의뢰한 자를 말한다.
- ⑮ 『광고사』라함은 광고물을 설치한 업체를 말한다.
- ⑯ 『지정게시판』이라함은 단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도록 입주사지원본부에서 지정한 게시판을 말한다.

제3조 [승인 또는 신고]

제2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설치할 수 있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다.

① 승인광고물

1. 돌출간판 (화단 등의 옥외 광고물 포함)-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필요로 한 것 임.
2. 입간판
3. 현수막
4. 에드벌룬

② 신고광고물

1. 회사 입구에 부착하는 상호 간판
2. 층 안내간판의 상호간판. 인포메이션 상호간판
3. 전단
4. 벽보
5. 스티커
6. 기타 홍보 및 안내, 판촉활동 등이며 인승승강기 내, 외부 광고주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.(제78차 입주사대표회의 의결)
 - 가. 1순위 : 기존계약업체
 - 나. 2순위 : 3단지 영업 입주사
 - 다. 3순위 : 3단지 구분소유자
 - 라. 4순위 : 타단지 순으로 한다.

제4조 [부착물의 설치에 대한 승인, 신고 절차 및 동의기준 등]

- ① 입주사지원본부는 광고주가 단지 내에 부착물을 시설하고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동의할 수 있다.
 1. 입주사등의 안전 및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어야한다.
 2. 입주사등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 반드시 필요해야한다.
 3. 단지의 미관과 조화를 이루어야한다.
 4. 설치위치가 적정해야한다.
 5. 광고내용이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부합하여야한다.
- ② 광고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된 부착물을 본래의 기능이 유지 되도록 관리하여야한다.

- ③ 광고주가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[별표2] 광고물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주사지원본부에 제출하여야하며 입주사지원본부가 이를 승인 할 때에는 승인교부대장을 비치하여 승인번호를 부여한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매 1년마다 재승인하여야 한다.
- ④ 광고주는 설치물의 사용이 종료된 때에는 그 설치물을 즉시 철거하여 원상을 복구하여야 하며 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금 50,000원을 입주사지원본부에 예치하여야 한다.

제5조 [광고 설치물의 소유권 등]

- ① 부착물의 소유권은 설치계약기간 중에는 광고주에 있다.
- ② 광고주는 당해 설치물의 유지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여야한다.

제6조 [광고물의 부착 금지 및 제한]

단지 내의 표시물을 부착 금지 및 제한하는 구역은 다음과 같다.

- ① 광고물 부착 금지장소
 - 1. 도로표식, 안전표식 및 주차표식 신호기
 - 2. 가로수
 - 3. 기념비 및 그 시설물
 - 4. 우편함, 소화전, 화재경보기
 - 5. 지정장소 이외의 벽면 및 화장실 벽 등
 - 6. 건물 벽면 전체
- ② 광고물을 제한하는 구역
 - 1. 다수가 사용하는 공용의 벽면 공간
 - 2. 입구의 셔터 및 각종 문
 - 3. 기타 공용 부분

제7조 [광고물의 설치 및 규격]

- ① 단지 내에 설치하는 광고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은 다음과 같다.
 - 1. 돌출간판 : 필요시는 입주사대표회의 결의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.
 - 2. 지주이용간판 : 필요시는 입주사대표회의 결의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.
 - 3. 입간판 : 제4조의 승인 및 신고 절차 완료 후 설치
 - 4. 현수막 : 게시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. 다만 벽면 부착 시 벽면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.
 - 5. 에드벌론 : 공공 목적으로만 설치할 수 있다.

6. 벽보 : 제8조(광고물 등의 비용분담)에 의거 벽보는 각종 게시판 안에 부착할 수 있다.
 7. 전단 : 종이로 만든 광고로서 비닐 코팅을 할 수 없고 차량, 사무실 출입구 등에서의 배포는 금지한다.
- ② 단지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규격은 별도 입주사지원본부와 협의에 의한다.
1. 간판은 한 개 이상 설치할 수 없다. 다만 제9조(광고물의 수량 제한)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 2. 간판 설치 시 공용부분에 돌출되지 않도록 벽면 부착용으로 설치해야 한다.
 3. 간판 내부에 형광등을 부착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전자식 형광등 안정기를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
제8조 [광고물 등의 비용부담]

부착물의 게시 및 설치비용은 아래와 같다.

① 광고수입

1. 게시판 및 지정된 장소 부착 광고

- 가. 입주사등의 부착물은 년4회에 한하여 무료로 하며 7일 이내 부착을 원칙으로 한다. 그 외는 외부업체와 같다.
- 나. 외부업체는 지정게시판에 7일간 게시에 A4용지 : 50,000원, A3용지 : 70,000원(부가세별도)을 선납하여야한다.
- 다. 단지 입주사등의 행사 등으로 게시하는 안내문은 7일에 한하여 무료로 한다.
- 라. 인승승강기, 내. 외부 및 기타광고비는 입주사대표회의에서 정한다.

2. 현수막

- 가. 입주사등의 부착물은 무료로 하며 15일 이내 부착을 원칙으로 한다.
- 나. 외부업체는 플래카드 1개를 15일간 게시 기준으로 100,000원(부가세별도)을 선납하여야 한다.

3. 판촉활동의 광고비 등은 입주사대표회의에서 의결로 결정한다.

② 광고임대수입

옥상 등 공용부분 임대에 대한 임대 시는 입주사대표회의의 결정으로 한다.

- ③ 입주사지원본부는 광고수입에서 광고물 관리에 필요한 모든 제반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광고수익 등에서 발생한 순이익을 매년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정산한 다음 관리외수입으로 적립한다.

제9조 [광고물 수량 제한]

- ① 입주사등의 상호간판 1개의 정면간판만을 설치하여야하며 승인을 득한 후에는 2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.
- ② 기타광고물 : 입주사지원본부의 사전 승인된 수량으로 한다.

제10조 [시행규정]

- ①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,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, 외래어 표기법 등에 적합하여야한다.
- ② 광고물은 회사명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.
- ③ 광고물은 본 규정 제7조에 의하여 설치하되 미관을 고려하여 설치한다.
- ④ 지면이나 건물, 기타공작물 등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이동이 가능한 간판을 설치할 수 없다.
- ⑤ 제8조의 광고는 색상이 너무 화려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광고는 게시하지 않는다.

제11조 [광고설치물의 교체]

입주사지원본부는 제4조제1항에 의한 광고설치물이 계약기간의 종료, 노후화, 단지여건의 변화 등으로 계속사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광고설치물의 교체 또는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12조 [지정게시판의 관리]

- ① 지정게시판의 관리는 입주사지원본부의 책임으로 관리한다.
- ② 지정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[별첨1] 게시판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입주사지원본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
제13조 [안전도 검사]

옥외 광고물은 관리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.

제14조 [미승인 부착물의 철거]

- ① 광고물을 입주사지원본부의 승인 없이 게시한 경우는 2일간의 자진 정비기간을 통보한 다음 자진 정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사지원본부에서 강제 철거할 수 있다.
- ② 입주사지원본부에서 강제정리 시에 발생하는 파손 등의 책임은 광고물주의 책임으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 또한 해당 광고물주가 부담한다.

③ 무단광고(스티커, 안내문)의 경우 입주사지원본부에서 즉시 철거할 수 있다.

④ 입주사지원본부의 승인 없이 설치한 광고물의 경우 그 설치가 타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, 후 승인 할 수 있으며 원상복구 이행담보예치금은 차 월 관리비등과 함께 광고주에게 청구 할 수 있다.

제15조 [적용상 주의]

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입주사등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
제16조 [기타]

① 본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승인을 받은 광고물이라도 미관 및 광고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철거, 철수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공공기관의 광고 및 임대는 제8조(광고물 등의 비용부담)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게시하거나 공용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.

③ 외부업체광고는 당 단지 입주사등과 경쟁이 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광고를 게시하거나 장소를 임대할 수 없다.

④ 옥외광고 및 공용부분 임대수입에 관련된 계약은 체결 전에 입주사대표 회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 [시행일]

본 규정은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.(제82차 입주사대표회의 의결)

제2조 [개정]

2017년 05월 16일 1차 개정(제154차 입주사대표회의 의결)

[별첨1] 게시판 이용 신청서

게시판 이용 신청서	결재	담당	팀장	본부장

BTP3	제 - 호					
신청회사명				대표전화번호		
주소						
담당자				전화번호		
				휴대폰		
게시기간						
사용료	요금기준(부가세별도)				지불방법	입금통장 계좌번호
	규격	A3	A4	기타		
	기간	일주일	일주일		<input type="checkbox"/> 현금 <input type="checkbox"/> 통장입금	부천테크노파크3단지 입주사대표회의
	금액	70,000원	50,000원			기업은행
						425-012237-04-029
총액				우리은행		
					1005-900-899611	
게시내용						

귀 단지에서 상기와 같이 게시판을 이용하고자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자 : (인)

- ※ 입주사의 경우 년 간 총 4주간(1주일씩 4회) 무료게시이며, 초과일수 게시의 경우 외부업체 게시요금(위 사용료)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
- ※ 준 비 물 :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
- ※ 주의사항 : 게시물 내용은 입주사지원본부에서 제한 할 수 있으며, 입금 확인 후 입주사지원본부에서 지정된 게시판에 게시하고 관리한다.
- ※ 문 의 처 : 3단지 입주사지원본부 [☎:234-3140~1, FAX:234-3145]

부천테크노파크3단지 입주사지원본부 귀 중

